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서삼석 · 김승원
이성윤 · 허 영 · 윤준병
박수현 · 허성무 · 고민정
박지혜 · 김남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.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.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.

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,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.

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,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.

이에 중기부장관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내용

가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 부정수급의 예방·적발·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79조의4 신설).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4(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·적발·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조회·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조회 또는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
 3.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

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 자료의 처리·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따른다.

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9조의4(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) ①</u>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·적발·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조회·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조회 또는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</u></p> <p>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</p> <p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</p>

3.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 자료의 처리·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따른다.

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